

방 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신료 징수방식을 결합징수로 변경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수신료 결합징수 의무화 관련 「방송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제43조제2항) 삭제
- 나. 결합징수 조항 신설에 따른 방송법 제67조 세항 변경에 맞춰,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제48조(수수료의 지급) 수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금액
2. 징수대상월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

제48조 중 “법 제67조제3항”을 “법 제67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①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납부금액</u> <u>2. 징수대상월</u> <u>3. 납부기한</u> <u>4. 납부장소</u> <u>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u> <u>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u>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u>법제67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u>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납부금액</u> <u>2. 징수대상월</u> <u>3. 납부기한</u> <u>4. 납부장소</u> <u>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u> 제48조(수수료의 지급) ----- <u>법제67조제4항</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1416